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4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17. 12. 12.(화) 14:30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이호성 위 원 장
허 욱 부위원장
김석진 상임위원
표철수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 불참위원 : 없 음

제4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4시 30분 개회 】

1. 성원보고

○ 이효성 위원장

- 차중호 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차중호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차중호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이효성 위원장

- 2017년 제4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지난 회의록 확인

○ 이효성 위원장

- 제43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1. 서면회의 결과 확인

○ 이효성 위원장

- 그리고 제44차 서면회의 결과, 제의된 <의결안건> 2건과 <보고안건> 1건이 원안대로 의결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회의록에 이의가 없으시면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이효성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과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들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의 효율성을 위해 <보고안건>을 먼저 논의하고, 이어서 <의결안건> 순으로 심의하겠습니다.

6. 보고사항

가. 「바이오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전면 개정안에 관한 사항

○ 이효성 위원장

- <보고사항 가> ‘바이오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보고해 주십시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 및 주요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AI 음성비서 서비스, 스마트폰 잠금해제 등 바이오정보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지문·홍채 등 바이오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기술·산업·법제도 분야 전문가로 이루어진 연구반을 4월부터 구성하여 11월까지 운영하였으며, 규범적·기술적 보호방안을 모두 검토하였습니다. 사업자 간담회를 지난 10월에 개최했고, 공개 세미나는 11월에 개최해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였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2007년 당시 정보통신부에서 제정했던 바이오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하는 것입니다. 2007년 당시에는 출입 통제 목적으로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바이오 인식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에 적용되었습니다만 당시에는 온라인 바이오정보 활용이 미비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적용이 잘 안 되었습니다. 금번 전면 개정 가이드라인은 개인을 인증·식별할 목적으로 바이오정보를 직접 수집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뿐만 아니라 OS사업자, 스마트폰 제조업체 등 대상을 확대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이오정보 보호의 필요성입니다. 바이오

정보와 개인정보 특징비교는 <표>를 참조해 주시고, 바이오정보는 모든 사람에 고유하고 패스워드 등과 달리 별도로 기억할 필요가 없어 편리한 장점이 있지만 그 특성상 한번 유출되면 변경이 어려워서 지속적으로 정보가 악용될 수 있어서 보호의 필요성이 더 큼니다. 다음입니다. 금번 가이드라인의 적용 범위입니다. 대상 바이오정보는 지문, 홍채, 음성, 필적 등 개인의 신체적·행동적 특성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을 인증 또는 식별하기 위하여 기술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합니다. 원본정보와 특징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진이나 음성정보 등은 특정 개인을 식별 또는 인증하기 위하여 기술적으로 처리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바이오정보에 해당되고, 단순 분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바이오정보로 보지 않습니다. 대상 사업자입니다. 이용자의 바이오정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하여 바이오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관여하는 사업자 전반, 즉 OS 사업자, 스마트폰 등 기기 제조사, 바이오정보를 직접 수집하지 않지만 인증결과 값 등을 전송받는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정보의 6대 보호원칙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례성 원칙입니다. 바이오정보를 활용함에 따라 수반되는 위험과 사업상 필요 및 예상되는 편익을 비교하여 바이오정보 수집·이용 여부를 판단하고, 수집·이용할 바이오정보 종류별 특성을 고려하여 서비스 도입 시 침해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바이오정보를 선택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수집·이용 제한의 원칙입니다. 바이오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항목, 보유기간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고 동의 받도록 하고 있고, 특징정보 생성 후에는 원본정보는 원칙적으로 파기하도록 하였습니다. 특징정보 생성 후 예외적으로 원본정보를 파기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목적) 및 보유기간을 별도로 고지하여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정보 처리 과정에서 인증·병력 등 민감한 정보가 추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목적제한의 원칙입니다. 인증 또는 식별 목적으로 이용자에게 동의 받은 바이오정보를 무단으로 질병검사 등 다른 목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바이오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사전동의 등 적절한 절차에 따르도록 하여야 합니다. 넷째, 통제권 보장의 원칙입니다. 이용자가 자신의 바이오정보를 쉽게 수정·삭제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기기·애플리케이션 또는 웹사이트 등을 통해 통제방법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아동 보호, 신체적 장애 등으로 바이오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하여 비밀번호 등 인증 및 식별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투명성 원칙입니다. 바이오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이용자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이용자의 문의 등을 처리하기 위한 피해구제 기능을 마련·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바이오정보 보호 중심 설계 및 운영 원칙입니다. 바이오정보 서비스 개발 또는 설계 단계부터 이용자의 바이오정보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값 설정 등 방안을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바이오정보를 서버로 전송하여 대량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침해요인 분석 및 사고예방을 위해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바이오정보의 수집·입력 단계에서 실리콘 인공지문 등을 탐지하여 서비스 이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위조 또는 변조된 바이오정보가 처리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안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바이오정보가 암호화되어 저장되기 전까지 전송구간은 암호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장·이용 단계에서는 제3자에 의한 위·변조, 유출 등의 침해 방지를 위하여 안전한 알고리즘으로 바이오정보를 암호화하여 저장토록 하였습니다. 바이오정보를 서버로 전송하기보다는 기기 내에서 안전한 영역에서 처리하는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파기 단계입니다. 원본정보는 특징정보가 생성된 경우, 그 목적을 달성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지체 없이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파괴하여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이용자의 동의, 다른 법률에 따라 원본정보를 보관할 경우, 원본정보는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하도록 권고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위원회 보고 후 오늘 자로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 KISA 홈페이지 등에 본 가이드라인을 게시하고 인터넷기업협회 등 관련 협회들을 통해 주요 사업자, 개발자에게 배포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붙임>으로 「바이오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허 욱 부위원장

-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부위원장

- 확인 차원에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바이오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시민 단체나 사업자단체 의견수렴은 충분히 하셨습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허 욱 부위원장

- 어떻게 진전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최윤정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10월에 간담회가 있고 그다음에 공개 세미나를 2017년 11월에 개최하였습니다. 외부 세미나 장소에서 공개 세미나를 개최해서 각계각층이 다 참여해서 들을 수 있도록 했고 질문들을 받았습니다.

○ 허 욱 부위원장

- 개인정보가 보호 이슈와 활용을 통한 산업 진흥 이슈가 상충될 우려가 굉장히 큼니다. 그런 와중에도 시민단체나 사업체단체 의견을 수렴해서 바이오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내 바이오 인식 시장 매출이 지난 2014년도 1,745억원에서 오는 2020년에는 2,790억원 규모로 연평균 7.6%씩 성장이 예상된다고 KISA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이오정보를 활용한 각종 신생사업이 계속 출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바이오정보를 활용한 비즈니스모델이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기업만이 아니라 신생 스타트업 기업들도 굉장히 활발히 진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이들 업체들이 대부분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수익창출에만 집중하다가 자칫 중대한 개인정보인 바이오정보 보호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고

하는 점들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내년에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을 하고 미진할 경우에 기획조사 등을 통해 바이오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시장에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유념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아까 보고를 들어 보니까 2007년도에 가이드라인 정보통신부 시절에 만들어졌다가 10년 만에 전면 개정되는 것이지요?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거의 10년만입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러면 바이오정보가 계속 활용도가 나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 법제화가 그동안에 미진했다는 인상이 드는데 그런 법제화의 단계가 있었습니까?

○ 최윤정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2007년도에 바이오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는 아까 앞서 안건 보고 때 언급한 바와 같이 당시 출입통제 관련해서 바이오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적용하기 위해 했는데 당시만 해도 개인정보보호법이 만들어지기 전 시절입니다. 개인정보 관련해서 정보통신망법밖에 없었는데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사업자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에 출입통제를 하는 사업자와 관련해서는 적용할 수 없어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고, 그 이후 개인정보보호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바이오정보는 개인정보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들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다 규제가 되고 있고, 온라인사업자도 온라인에서 바이오정보를 처리할 때는 마찬가지로 망법에 따라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때와 달리 10여년이 흐르면서 바이오정보가 출입통제 외에도 온라인에서 인증, 음성비서 스피커, 스마트폰 잠금 해제 등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온라인에서 보다 제대로 확대된 바이오정보 활용서비스에 맞게 보호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서 온라인 분야로 전면 개정하는 내용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향후에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면서 현재 이 가이드라인에는 저희 법에서 담고 있는 수준 외에도 추가적으로 자율적 준수를 권고하는 사항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사항들은 가이드라인 시행을 통해 지켜보고 입법화할 것들은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특히 수집·이용 제한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보면 대부분 다 '해서는

안 된다', '암호화해서 저장을 해야 하고 또 파기 단계에서는 반드시 지체 없이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파기하여야 한다' 이런 금지조항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의 한계상 이것이 제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갈수록 바이오정보를 활용한 산업이 굉장히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뿐만 아니라 빨리 법제화가 되어서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이런 것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이드라인부터 먼저 시행하는 것이니까 오늘부터 당장 시행이 되는 것이지요?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러면 그것을 잘 면밀히 관찰해서 법제화가 필요한 부분은 빨리빨리 보완을 해서 시장에 혼선을 주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면 주시지요.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짧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제가 제3기에서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작년에 비식별화조치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오늘 바이오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합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이나 규정을 손 볼 때 보면 시민단체에서 상당히 의심을 많이 합니다. 이것이 혹시라도 사업자에 편향된 정책방향을 정하는 것이 아니냐, 그로 인해서 개인정보보호가 소홀해지지 않느냐 이런 의심을 많이 합니다. 다행히 이용자 정책국이나 특히 개인정보보호윤리과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국내외 트렌드에 대해서는 상당히 발 빠르게 잘 대응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 보고를 받을 때마다 항상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단히 많이 수고해 주셔서 좋은 성과를 많이 냅니다만 특별히 이러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규제를 개폐할 때,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때 시민단체와 관련단체 그리고 우리 위원회와의 신뢰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거의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시민단체나 인권단체 이런 곳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과연 방통위가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어떠한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많이 제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대화하시고 설득하시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관련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저도 짧게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바이오정보라는 것은 일반 다른 개인정보와 달라서 변조되거나 잘못 유출되면 피해가 훨씬 클 수 있지요. <붙임>자료에 나와 있듯이 미국에서도 연방 인사관리처 DB가 전부다 유출되어서 상당히 문제가 된 적도 있기 때문에 이 가이드라인을 전면 고쳐서 시행하는데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생기든지 굉장히 유념해서 계속 추적·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앞으로의 바이오정보가 산업에서 많이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바이오정보 6대 보호원칙, 또 수집과 입력, 저장과 이용 그리고 파기단계에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용한 산업적 이용에 스타트업계나 신규 중소기업들이 이런 것을 활용할 때 지나치게 규제의 역할을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원칙을 일단 지켜야겠지만 저희 네거티브 레귤레이션 측면에서 볼 때 이런 것을 활용한 새로운 산업들이 등장할 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배려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고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민단체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작업도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 이런 것들은 산업적 활용에서 네거티브 레귤레이션 적용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7. 의결사항

가. O2O사업자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2017-45-269~275)

○ 이효성 위원장

- <의결사항 가> ‘O2O사업자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은 당초 12월 6일에 상정 예정이었으나 내부 일정 등으로 인해 부득이 오늘 상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김재영 국장께서 안건을 보고해 주십시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 등을 위반한 7개 사업자에 대해 같은 법 제76조제1항 등에 의한 시정조치(안)를 심의·의결하고자 합니다. 조사배경입니다. 이용자의 다양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서비스에 활용하고 있는 생활밀접형 온·오프라인연계

(이하 'O2O') 사업자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여부에 대해 저희가 기획조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조사대상은 아래 <표>에 있는 것처럼 소셜 분야, 영화예매 분야, 패션 분야, 차량 관리, 인테리어, 의료헬스, 식음료, 숙박, 중고판매, 홈서비스, 중고차 경매 등 13개 분야 13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조사대상 사업자 선정은 금년 5월 분야별 '랭키닷컴' 기준 이용자수 1위 사업자를 대상으로 했고, 기 조사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이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하였습니다. 최근 3년 이내 기획조사를 실시했던 배달주문·부동산·여행분야는 이번 조사에서는 제외하고, 내년도 기획조사에 포함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경과입니다. 현장조사를 금년 6월부터 7월까지 실시했습니다. 시정조치(안)에 대한 사전통지 및 사업자 의견접수를 8월까지 하였고, O2O사업자에 대한 최고경영자 및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대상으로는 김석진 상임위원님 참석 하에 교육 및 간담회도 별도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9월에 실시했습니다. 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사대상 사업자 13개 사업자 중에서 다이닝 코드 등 7개 사업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사항이 확인되었으며, 롯데쇼핑(롯데시네마), (주)레벨 13(룩핀), (주)모두컴퍼니(모두의 주차장), 삼성전자(스헬쓰), (주)스타벅스커피(사이렌오더), NHN티켓링크(티켓링크) 등 6개사는 위반사항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피심인 일반현황(7개사) 및 다음 페이지 위반 현황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붙임 1> <표>에 나와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다이닝코드는 빅데이터 기반 맛집 소개 서비스 다이닝코드 애플리케이션 등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개인정보의 파기, 즉 1년간 서비스를 미이용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약 467,000여건을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하지 않음으로써 정보통신망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였습니다. (주)버킷플레이스는 인테리어 정보제공을 하는 업체로서 오늘의 집 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조치와 관련 접근통제, 즉 개인정보취급자의 접근권한 부여와 말소기록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함에도 그렇지 않아서 위반했고, 제휴점 152개 취급사업자가 외부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시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적용하여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2호를 위반했고,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 보관(6개월) 의무, 정기점검(월 1회 이상) 의무, 백업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였습니다. (주)쏘카는 차량공유 렌터카 서비스 업무를 하는 사업자로서 쏘카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취급자가 외부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시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미적용하고, 개인정보 다운로드·파기 가능한 취급자의 컴퓨터 망분리를 적용하지 않아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 보관(6개월), 정기점검(월 1회 이상), 백업 의무 위반을 위반하여 제28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2개 항목 3개 세부사항을 위반하였습니다. (주)야놀자는 숙박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최소 부여 원칙을 위반하고, 제휴점(5,974개) 취급자가 외부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시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였습니다. 또한 이용자의 계좌번호 11건을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하여 제28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였고, 1년간 서비스를 미이용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497,691건을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하지 않음으로써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3개 항목 4개 사항을 위반한 바 있습니다. 다음 (주)퀵켓은 중고용품 판매하는 번개장터 앱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침입차단 및 탐지시스템을 미설치·미운영하여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였습니다. (주)피알앤디컴퍼니는 중고차 경매 앱 헤이딜러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개인정보

취급자의 접속기록 보관(6개월), 정기점검(월1회 이상), 백업 의무를 하지 않아 제28조제1항 제3호를 위반하였습니다. (주)홈스토리생활은 가사도우미 앱 대리주부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개인정보 보호조치 접근통제와 관련된 4개 사항, 접속기록의 위·변조 방지와 관련된 사항, 그다음에 이용자의 계좌번호(3,559건) 미암호화 저장, 개인정보 전송구간 미암호화, 그다음에 개인정보의 파기(유효기간제)를 지키지 않는 등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2호, 제3호, 제4호 및 제29조제2항을 위반하는 등 4개 항목 8개 세부사항을 전부 위반하였습니다. 5페이지 피심인 의견 및 검토의견입니다. 위반사항을 모두 인정하였으며, (주)야놀자는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시정조치(안)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다이닝코드 등 7개 사업자에 대해 위반행위 즉시 중지,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제출토록 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과태료 부과(안)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별표 9] 및 처리지침에 따라 부과하고자 합니다. 먼저 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과 관련해서 (주)버킷플레이스 등 6개 사업자에 대하여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1,000만원을 적용하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이었던 (주)버킷플레이스, (주)쏘카, (주)야놀자, (주)홈스토리생활 등 이상 4개 사업자는 기준금액의 50%인 500만원을 가중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업규모가 소기업에 해당하는 5개 사업자 중 보호조치 위반행위가 1개인 (주)킵켓과 (주)PRND컴퍼니 2개사에 대해서는 기준금액의 50%인 500만원을 각각 감경하고자 합니다. 최종과태료입니다. (주)버킷플레이스·(주)쏘카·(주)야놀자·(주)홈스토리생활에 대해서는 과태료 각 1,500만원을 부과하고, (주)킵켓과 (주)피알앤디컴퍼니에 대해서는 각 500만원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위반을 했던 (주)다이닝코드·(주)홈스토리생활·(주)야놀자 3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제1회 위반에 해당하는 1,000만원을 기준금액으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과태료를 특별히 가중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감경사항은 (주)다이닝코드·(주)홈스토리생활 2개사에 대해 사업규모가 소기업인 점을 감안하여 기준금액의 50%인 500만원을 감경하고자 합니다. 최종과태료는 (주)야놀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고, (주)다이닝코드·(주)홈스토리생활에 대해서는 과태료 각 500만원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최종과태료는 (주)다이닝코드 500만원, (주)버킷플레이스 1,500만원, (주)쏘카 1,500만원, (주)야놀자 2,500만원, (주)킵켓 500만원, (주)PRND컴퍼니 500만원, (주)홈스토리생활 2,000만원을 각각 부과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시정조치를 통보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위원님들께서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지난번 제가 9월에 사업자들과 간담회도 하고 교육도 같이 해 봤는데 그날 모인 분들을 보면 대부분 청년 자영업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온라인 이런 마인드는 되어 있는데 느낀 점은 보안 의식이 굉장히 미약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정보처리 담당직원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그래서 투자를 소홀히 한다 싶어서 제가 그런 점을 강조했는데 “돈 벌기는 쉽지만 보안을 하지 않으면 많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 그래서 보안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인식을 바꾸시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그 점에서 살펴보니까 쏘카라는 곳이 차량 공유 렌터카 서비스인데 이것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앞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야놀자 숙박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쏘카 같은 곳은 직원이 325명, 야놀자는 213명, 1년 매출이 작년 말 기준 900억원, 330억원 굉장히 큰 회사로 신장했습니다. 그런데 위반사항을 보면 전부 기초적인 부분을 다 위반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접근통제나 접속기록 위·변조 방지를 모두 소홀히 했습니다. 쏘카는 세 군데 다 걸렸고, 야놀자는 네 군데 4개 항목이 전부 위반사항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900억원이나 매출을 올리고 직원이 300명 되는 회사가 이런 기초적인 것을 다 어기고 있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보면 겨우 직원 21명 있는 버킷플레이스, 거기에서 받는 과태료 1,500만원과 300명 900억원씩 매출을 올리는 회사가 과태료가 1,500만원으로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이래서 시장에 어떤 경고를 던질 수 있겠느냐, 이것은 다시 한 번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규정상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요?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기준액을 올리거나 아니면 매출액 대비 어떤 기준을 정해서 그런 곳은 과태료를 많이 부과해서 차등이 있어야지, 이렇게 작은 영세업자와 똑같이 이렇게 매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에도 경각심을 주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지금 위원님들께서 과징금, 과태료 제도와 관련해서 더 엄격하게 제재를 가하는 말씀이 많이 계셔서 내년도 정보통신망법상 과징금 부과기준, 또 과태료 부과와 관련된 시행령 또는 고시 등을 개정할 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해서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단말기유통법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사업자와 대규모사업자를 차등해서 나누어서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렇게 검토를 전향적으로 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교육할 때 보니까 정보처리 담당직원 그 유·무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조사해서 전담요원을 두고 있지 않으면 빨리 전담 직원을 두도록 행정지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는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있기 전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생활밀접형 서비스는 기획점검을 해서 사전에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사업자들이 미연에 개인정보보호와 관련 투자를 보강하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기획조사를 통해 유출되기 전에

보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또 하나 마지막으로 짚막하게 지적하겠습니다. 사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마 수십만 개쯤 생기고 있지 않은가 싶은데, 그것을 우리가 다 전수조사는 어차피 못하니까 기획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런데 조사대상 업체 선정기준을 보면 '랭키닷컴'에서 나타난 이용자수 1위 사업자를 기획조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런데 랭키닷컴이 어떤 회사입니까? 민간업체일 것 아닙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 김석진 상임위원

- 관에서 하는 공공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영리업체이지 않습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 김석진 상임위원

- 영리업체가 발표하는 랭킹을 우리가 그대로 다 조사 대상 선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 적절합니까? 남 장사시켜 주는, 관이 그것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혹시 다른 공공기관에서 해당 애플리케이션 또는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숫자를 발표하는 것이 지금 저희가 찾지를 못해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 천지현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저희가 통상 마켓에서 마켓사업자가 집계되는 다운로드 숫자는 공신력 있는 숫자가 나오는데 보통 다운로드는 신생 앱들이 다운로드가 많이 되고 그것이 실제 이용자수와 조금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대상을 삼을 때 다운로드수를 기준으로 하기도 하고 이용자수를 기준으로 하기도 하는데 이용자수는 현재 공신력 있는 숫자가 나오는 것은 없고 이것이 보편적으로 많이 인용되어서 여러 군데서 이용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예를 들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업체가 랭키닷컴이라면 예를 들어 돈을 받고 이용자수를 부풀려서 랭킹을 올려주는 조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검증할 수 있습니까? 공신력 있다고 보는 것입니까? 영리업체인데, 기준을 어떻게 하는지 고민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때 이것은 이야기가 안 됩니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우리가 새로운 공신력 있는 기준을 발굴하든지, 아니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언론사가 책임을 지는 것이니까 그런 보도를 인용해야지 영리업체 것을 그대로 베껴 와서 조사대상이 되고 안 되고 그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이것 혹시 어떤 방식으로 이 업체들이 선정됐는지 대상업체들에게 알려 줬습니까?

○ 천지현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저희가 최초 조사계획을 작성해서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고 그때도 이용자수 기준으로 하겠다고 선정에 대해 보도자료를 배포했었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그것이 랭키닷컴에 의한....

○ 천지현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랭키닷컴에 저희가 협의한 것은 아니고 이것은 다 공개된 자료이기 때문에 누구나 마케팅 목적으로 다 이용하는 공개된 자료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대상업체들에게 랭키닷컴 순서대로 뽑았다는 이야기를 했냐고요?

○ 천지현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통상 이용자수에 대해 보통 업계에서 집계할 때 이것을 많이 인용하고, 저희가 이용자수 기준이라고만 했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항의를 받지 않은 것이지요?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 천지현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저희가 개인정보 유출사고 나기 이전에 미연에 한번 점검하고 사전 컨설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업자들은 이런 보안 취약점을 이미 지적을 받아서 기 보완 조치하거나 보완 조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자 측면에서도 더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부위원장

- 존경하는 김석진 위원님 우려는 충분히 저도 감안합니다만 사무처에서 조사할 때 랭키닷컴이라는 것은 일종의 업종별 사이트 참조일 뿐 그 기준에 있어서 1, 2위를 한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즉, 업종별로 어떠한 앱사이트의 선호도가 높은지 그 기준을 참고한 것이라고 봅니다. 실제 그런 것이지요?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허 욱 부위원장

- 제가 보기에 이번 안전은 생활밀접형 온·오프라인 연계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기획조사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 규제당국으로서 매우 의미 있는 행정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보면 ‘야놀자’의 경우 위반내역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번 ‘여기어때’ 사례에서 나타났듯이 숙박서비스 정보제공은 사생활 침해 관련 문제가 매우 중대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 업종, 즉 숙박서비스 제공 업종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는 할 수 없지만 다시 샘플링 조사라도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지당하신 말씀 같습니다. 저희 침해조사과 인력이 과장 포함해서 7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O2O 서비스 외에 저희가 계속 통신사, 영업점, 가상화폐사업자 지금 10개 사업자에 대해 사전 기획조사를 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부위원장님 말씀 다 들어서 내년도에 숙박 앱의 경우에는 민감한 정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체크한 숙박 앱만 하더라도 애플리케이션이 10개 이상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 허 욱 부위원장

- 혹시 한 번이라도 더 이런 사례가 나타날 경우에 개인정보, 특히 사생활 침해 문제가 굉장히 심대하게 나타날 수 있어서 이 문제는 중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사대상사업자들을 보면 중견기업이나 대기업들도 있지만 스타트업 기업들이 다수입니다. 그리고 또 위반사업자들의 위반내용들도 보면 개인정보 보호조치와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를 공통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김석진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개인정보 수집·활용 스타트업 기업들이 개인정보보호 중요성에 대해 간과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반증이라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이번 조사내용을 널리 홍보해서 개인정보에 대한 설비투자 혹은 시설투자가 초기에 당연히 투자될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 조치가 적극적으로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실시예정인 배달주문, 여행, 부동산 분야, 기획조사 계획도 미리 알려져 관련된 기업이 사전에 개인정보시스템 구축에 투자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부위원장님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인력을 당장 늘려주지 못하면서 이런 주문을 하는 것이 우습지만 어쨌든 내년에는 저희들이 조직을 복원해서 그런 인력도 늘려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가지 측면을 대외적으로 많이 알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한다는 관점이 개인정보에 관해서는 우리가 부정기적으로도 기획조사를 해야 합니다. 여러 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부정기적으로 기획조사를 해서 이에 대한 조치를 할 것이라는 측면 하나,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앞으로 법을 손을 봐서 여기에 관한 과태료, 과징금 기준을 반드시 상향하겠다는 보도자료를 확실히 내서 여기에 방청하고 계신 언론인들 말고도 또 다른 언론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쪽에도 충분히 주지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알겠습니다. 지금 제4기 방송통신 정책과제에 정보통신망법 과징금과 관련해서 강화하겠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고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 고삼석 상임위원

- 없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나. (주)비티씨코리아닷컴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2017-45-276)

○ 이효성 위원장

- 이어서 <의결사항 나> ‘(주)비티씨코리아닷컴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하여 김재영 국장 보고해 주십시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조제4항, 제64조의3제1항, 제69조의2제2항 및 제76조제1항에 의한 시정조치(안)를 심의·의결하고자 함입니다. 조사개요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신고와 관련해서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경과입니다. (주)비티씨코리아닷컴은 협박메일을 받고 사고를 금년 6월 29일 인지했고, 신고를 6월 30일 했습니다. 해커가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협박메일을 총 33차례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발송한 바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7월 말까지 현장조사를 마쳤고 조사결과 및 행정처분안 관련 법령 검토를 7월 말까지 하였습니다. 시정조치(안)에 대한 사업자 의견제출 통지 및 의견접수를 11월에 마쳤습니다. 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피심인 일반현황입니다. (주)비티씨코리아닷컴은 2014년 1월 5일부터 영리를 목적으로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 취급관련 웹사이트 ‘빗썸’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입니다. 개인정보 유출경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해킹사고 관련 자료와 (주)비티씨코리아닷컴에 남아 있는 접속기록 분석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2가지 경로로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스피어피싱을 통한 이용자 개인정보 파일이 유출되었습니다. 미상의 해커가 (주)비티씨코리아닷컴의 직원 채용기간 중인 '17년 4월 28일경에 회사와 업무자문 계약관계에 있는 이○○의 이메일로 원격제어형 악성코드가 포함되어 있는 “이력서.hwp” 파일을 첨부한 스피어피싱 메일을 발송하였습니다. 이를 실행한 이○○의 개인용 컴퓨터가 4월 28일 원격제어형 악성코드에 감염되었습니다. 미상의 해커는 악성코드에 감염된 이○○의 개인 컴퓨터에서 다수의 파일을 외부에 유출하였으며, 이 중 회원 정보 31,506건이 포함된 “2017년 회원관리 정책.xlsx”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상의 해커는 유출한 파일 일부를 파일공유사이트인 ‘페스트빈(Pastebin)’ 등에 공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전대입공격을 통한 이용자 계정 탈취가 있었습니다. 미상의 해커는 금년 4월 1일부터 6월 29일까지 (주)비티씨코리아닷컴이 운영 중인 웹사이트(www.bithumb.com)에 출처를 알 수 없는 아이디, 패스워드로 약 3,534개의 IP주소 국내 IP 3,472개, 국외 IP 62개에서 약 200

만번의 사전대입 공격을 시도하였으며, 이 중 로그인 성공으로 최소 4,981개의 이용자 계정이 탈취되었습니다. 266개 계정은 로그인 성공 후 비트코인 출금 로그 기록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내역입니다. 스피어피싱 공격 및 사전대입 공격 2건의 해킹 공격으로 (주)비티씨코리아닷컴이 최소 36,487명의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 또는 탈취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입안사항입니다. 4가지 위반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침입차단 및 탐지시스템 설치·운영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주)비티씨코리아닷컴은 침입 차단시스템 및 침입탐지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 있었으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 주소를 재분석하지 않아 법 제28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전대입 공격으로 추정되는 시도를 탐지하지 못한 점이 인정됩니다. 개인정보 보호조치 암호화를 하지 않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개인용PC에 이용자개인정보(35,105건)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하여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이○○의 업무를 처리하는 개인용 PC에 설치된 한글 프로그램 등에 대해 백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하지 않아서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가 복사된 외부 저장매체 등을 파기하고, USB 또는 파일 서버를 통해 개인정보파일을 전달한 기록 등을 남기지 않는 등 법 제28조제1항제6호를 위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자 의견입니다. 법령 위반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향후 보안을 보다 강화하였다는 점, 피해자에 대해 자발적으로 1인당 약 10만원 약 31억원의 피해보상을 하였으며, 절차 위반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처리를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시정조치(안)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명령(안)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즉시 중지,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시정명령 이행결과 제출 등 시정명령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징금 부과 사항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분실 또는 유출된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조치(제28조제1항)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징금 산정 절차는 법 시행령·고시에 따라 추진했습니다. 먼저 관련 매출액입니다. (주)비티씨코리아닷컴의 전체 매출액을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로 하고, 2014년 1월 5일 사업 개시 이후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하고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을 약 20억 7,200여만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최근 3년간 매출액이 적은 것은 2014년 창업해서 4,100만원, 2015년 약 18억 5,000만원, 2016년 43억 1,800만원 정도로서 3년간 평균했기 때문에 이렇게 산정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련 매출액 산정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중대한 위반 행위'로 보아 관련 매출액의 1,000분의 21을 적용한 4,352만 2,000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판단기준은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에 따라서 하였습니다. 필수적 가중·감경입니다. 위반행위 기간이 2년 초과함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2,176만 1,000원을 가중하고, 최근 3년간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2,176만 1,000원을 감경하고자 합니다. 추가적 가중·감경입니다. 특별히 가중할 사유는 없으며,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자진 신고하고 조사에 협력한 점 등은 인정되지만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보이스피싱, 가상화폐 출금 등 이용자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 감경은 하지 않하고자 합니다. 과징금 산출내역은 <표>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종 과징금은 4,35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입니다. 기준금액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

하는 1,000만원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보호조치 위반행위가 4건 이상에 해당되어 과다하므로 기준금액 50%를 가중하고, 특별히 감경할 사유가 없어서 감경하지 않고자 합니다. 따라서 최종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징계 권고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69조의2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관련하여 (주)비티씨코리아닷컴의 대표자 및 책임 있는 임원을 포함한 책임자에 대해 징계할 것을 권고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시정조치 사항을 통보하고 내년 초에 이행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쳤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오늘도 각 신문에 가상화폐가 난리입니다. 200만명이 뛰어들어서 집단투기장으로 변했고, 하루 6조원의 가상화폐가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융위원장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인정할 수 없다, 허가해 주지 않겠다, 금융기관의 거래업무를 절대 시키지 않겠다”, 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 자체를 중단시키겠다” 계속 그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주)비티씨코리아닷컴에 대한 제재를 하면 소위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업체의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첫 처벌이 되는 사례가 되지요?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렇다면 우리 언론들에게도 굉장히 관심이 될 텐데 이렇게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업체가 보안에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해커에 망이 뚫리고 있고 이렇게 돼서 과징금·과태료가 부과되고, 작년 매출액이 43억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3년 만에 43억원 매출을 기록했으니까 직원수도 150명이고. 그렇다면 이것이 자칫 솜방망이 처벌이 되면 안 되지 않느냐, 온 국민이 고등학생까지 가상화폐에 혈안이 되어서 들어옵니다. 보호장치도 없고 실체도 없어서 통화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큰일입니다. 우리가 거래소에 대한 첫 제재인데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 조금 걱정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지금 저희가 가상화폐 사업자 ‘빗썸’의 경우에 개인정보보호 위반여부에 대해 조사해 보니까 다른 O2O사업자나 이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조치나 정보보안 조치가 그래도 상당히 강화되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관리적인 측면, 개인 PC에 관련된 보안 업데이트가 미흡했다는 점, 그다음에 침입탐지시스템을 IP 분석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하면서 200만건의 대입공격에 대해 사전에 분석해서 차단하는 점에 소홀함이 인정되어서 지적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징금, 지금 말씀하셨던 부과기준과 관련해서 현재는 최근 3년간 매출을 평균해서 위반행위 관련 매출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2014년 1월에 창업이 되어서 딱 3년밖에 안 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가장 가중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까 제4기 위원회에서 과징금 부과기준을 개선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산정된 과징금 또는 정액과징금, 저희 망법에서는 4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높은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형태의 법 개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위원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이것이 자칫하면 온 국민이 투기 도박판에 다 뛰어들 태세입니다. 비트코인이 2,000만원 이렇게 가니까, 그래서 이것을 거래하는 업체에 대해 처음 우리가 과징금을 매기고 제재하기 때문에 비록 이번에는 규정상 이것밖에 안 되지만 국민들이 볼 때 '비트코인 여기에 가상화폐 거래소가 집중 피싱을 해커들의 공격을 받고 있구나, 그래서 보안이 취약해서 이번에 과징금 까지 이 업체가 받았구나!' 이것이 보도가 될 텐데 우리가 좀 더 앞으로 아주 강력한 처벌할 것을 검토 중이라는 것이 보도자료로 보태져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함부로 가상화폐 거래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느끼도록 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면 말씀하시지요.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부위원장

- 김석진 위원님 이야기해 주셨듯이 이번 안건은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가상화폐 혹은 가상 통화 거래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첫 시정조치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확인해 보면 피심인 (주)비티씨코리아닷컴이 집단소송을 당한 바 있지요?

○ 천지현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빗썸' 개인정보 유출 건과 관련해서는 회사 측에서 아직 소장을 받은 적은 없다고 하고, 지금 '빗썸' 피해자 135명이 중앙지검에 고소장을 2017년 11월 16일자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송은 준비 중에 있고, 그다음에 접속장애로 인해 서버가 다운된 사건에 대해서는 640여명이 피해액 3,000억원을 주장하면서 소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서버 접속장애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개인정보와 관련 없는 사안입니다.

○ 허 욱 부위원장

- 피심인은 국내 가상통화 거래소 가운데 비트코인 거래 점유율이 75.7%나 됩니다. 이런 정도로 거래량이 급증하다 보니까 서버 다운으로 인해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고, 집단소송을 제기할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관련 해외사례를 보면, 영국에서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이 법적 통화로 인정이 됐고 일본도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상통화 관련된 자금결제법을 제정했고, 미국은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선물상품 매매를 시작하는 등 활성화 정책을 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이나 러시아, 인도, 인도네시아는 가상통화 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범정부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인데 기존 법체계에 일종의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가상통화 거래가 투기적 양상을 보이는 데 대해서는 김석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강력한 규제대책이 필요하지만 비트코인의 기술적 토대가 되는 블록체인 기술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인프라이기도 해서 기술적·산업적 측면에서 균형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통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신규 기술 도입과 개인정보보호 강화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미인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막상 개인정보 유출된 것을 보면 어이가 없을 정도로 단순한 정도의 사안이라서 이것이 이론과 현실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점을 느끼게 됩니다. 방통위 현장 점검 이후에 피심인들이 보안 강화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고, 방통위 입장에서 그런 정도면 현재 이해할 만한 수준인지 의견은 어떻습니까?

○ 천지현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비티씨코리아닷컴이 개인정보 유출 이후에 사용자 인증절차를 조금 강화를 했습니다. 최초에는 로그인할 때 아이디, 패스워드만 했는데 그것을 2차 인증수단을 도입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서버에 대한 보안조치도 더 강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도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금융권 수준에 오를 정도의 인증이나 출금 관련해서 조치는 하고 있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금융위, 법무부, 기재부 다 해서 범부처 가상화폐 관련한 제도화 논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TF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통위도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안으로 그 회의에 참가하고 있고, 그런 가상화폐 거래소와 관련된 이용자 피해 방지나 도입 제도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주, 다음 주 중으로도 논의가 계속될 예정입니다.

○ 허 욱 부위원장

- 관리적 차원에서 국내에 20여개 관련 비트코인 거래업체들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에게 이런 관리적 차원에서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강화조치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행정지도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마 이것이 아까 앞에서 O2O 사업자 정보유출과 관련해서 비슷한 사건 중 하나인데, 그러나 ㈜비티씨코리아닷컴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에 특별히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징금, 과태료, 책임자 징계 이런 것이 철저히 이루어지고 이후 정보유출 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저는 비트코인 그 자체에 대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희 영역이 아니고 이것은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이런 쪽의 소관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호해야 하는지, 또는 지금 우리 정부 측에서 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불법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좋은지 제 판단은 보류하고, 특히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를 특별히 더 잘해야 할 업체이고, 앞으로 이런 과징금, 과태료, 책임자 징계 등을 통해 이 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에 더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8. 기 타

○ 이효성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회의는 12월 20일 수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폐 회

○ 이효성 위원장

- 이상으로 2017년도 제4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36분 폐회】